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43
----------	-------

발의연월일 : 2025. 12. 26.

발의자 : 김상훈 · 김선교 · 진종오

이현승 · 김형동 · 윤한홍

최보윤 · 엄태영 · 이종욱

이달희 · 최은석 · 조지연

이인선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가상의 인간이 실제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음.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아니한 화장품 등의 구입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하여 화장품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항 제4호 신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u> 」 <u>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한 영상으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사용한 광고</u>
4. (생략) ②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